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

의안 번호	622
----------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이제까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해오던 새마을소득사업 용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규제조항을 삭제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용자 대상자를 가구, 마을, 단체로 하던 것을 농어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기금의 대부신청시 통·리 개발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연대

보증을 하던 것을 재산세납부금액 2만원이상 관내 거주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관계공무원이 용자받은 자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 2.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 3.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 4.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 1.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영농정착의지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은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 1.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매우 빈약한 영세농어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2.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4.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가구,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융자 한도액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5천만원, 농어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자로 하여금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중 “가구(마을단체포함)가”를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지원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농축산과 ☎ 940-4561
입 안 자	농축산과장	박 신 규
	농정담당	이 한 주
	담 당 자	신 승 화

【 별지서식 】

세 마을소득사업융자신청서

1. 영농규모

구분	영 농 이 규 모										주작목현황	
	농 지 규 모(ha)					축 산 (두)					이 선 어업 (톤)	주작목 및 특작목명
	계	전	답	초지	과수	양어장	젓소	한우 육우	양돈	기타		규 모
면적 및 규모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가축자가사육증명 등 영농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경 력

< 농 가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영농후계자 지정 년도	농어촌지도자 가입 년 도	작 목 반 활동 상 황	농업관련 자 격 증	기타농업 관련경력
	학교명: 졸업년:			작목반명:		

< 법인, 작목반 >

단 체 명	설 립 일	주 사 업	출 자 액	조합원수	비 고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		
			계	융자금	자부담
계					

※ 세부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세마을소득사업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위 신청인이 귀 시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보증인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u>가구·마을·단체</u> 를 선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 ----- <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u> -----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u>가구</u>	1. ----- ----- <u>농이가</u>
2.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u>마을 또는 단체</u>	2. ----- <u>농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u>
3.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u>가구·마을 및 단체</u>	3. ----- <u>농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u>
4.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u>가구·마을 및 단체</u>	4. ----- <u>농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u>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 ----- ----- --
1. <u>실업계</u>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u>농업계</u> ----- <u>영농정착의지와</u> ----- -----
2.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u>참여마을 및 단체</u>	2. ----- <u>농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u>가구 · 마을 · 단체</u>에는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u> -----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1.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매우 빈약한 영세농어가 및 소득 수준이 낮 은 <u>마을</u> 2.지역특산물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u>가구</u>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 사업으로 융자 지원하는 <u>가구 · 마을 및 단체</u> 4.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u>가구 · 마을 및 단체</u>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u>가구 · 마을 및 단체</u>를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 --- 1. ----- <u>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u> 2. ----- <u>농어가 또는 영농 조합 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u> 3. ----- <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 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u> 4.-----<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 회사법인 · 작목반</u> ② ----- <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 회사법인 · 작목반</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 한도 액은 <u>마을 및 단체당 5천만원, 가구</u> <u>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u> <u>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u> <u>제5조 2항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u> <u>에는 예외로 하되, 동조동항의 특별</u> <u>지원사업중 1호의 사업은 1인당</u> <u>5백만원 이하로, 2호의 사업은</u> <u>1읍면동당 1억원 이하로 한다.</u>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u>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u> <u>작목반-----농어가당-----</u> <u>-----, < 단서조항 삭제></u>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 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u>가구 ·</u> <u>마을 및 단체</u> (이하 "대부신청자" 라 한다)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 장을 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u>동 · 리</u> <u>개발위원중에서 3명이상(가구의</u> <u>경우는 일반농가 2명이상)의</u>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에는 <u>대부신청 마을 · 단체 또는</u> <u>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직담보</u> <u>의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u>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u>---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u> <u>농업회사법인 · 작목반-----</u> ----- ----- ----- ----- ②----- <u>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u> <u>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 이상</u> ----- ----- ③제2항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대부자로 하여금</u> <u>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u>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용자를 받은 <u>가구·마을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u>	제10조(감독)----- <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u> <u>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u> <u>하게 할 수 있다.</u>
제15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의 대부를 받은 <u>가구(마을·단체 포함)가</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생략)	제15조(용자금의 반환) ----- ---- <u>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이</u> ----- ----- ----- ----- 1~3(현행과 같음)